

의안번호	2201367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4.7.5.
추 계 번호	24E1634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자녀세액공제 확대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자녀 1명당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
- 재정수입 감소는 2025년 2조 3,751억원, 2029년 1조 5,263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8조 5,827억원(연평균 1조 7,165억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자녀세액공제 확대 (안 제59조의2①)	-23,751	-16,956	-14,818	-15,039	-15,263	-85,827	-17,16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59조의2제1항, 3항 (자녀세액공제)	○ 자녀세액공제의 자녀 기본공제 및 출산·입양공제의 공제금액 상향조정 － (현행) 자녀수에 따라 1명 연 <u>15만원</u>, 2명 연 <u>35만원</u>, 3명 이상인 경우 연 <u>35만원</u>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<u>30만원</u>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고,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첫째 <u>30만원</u>, 둘째 <u>50만원</u>, 셋째 이상 <u>70만원</u>을 공제 － (개정안) 자녀수에 따라 1명 연 <u>50만원</u>, 2명 연 <u>100만원</u>, 3명 이상인 경우 연 <u>100만원</u>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<u>100만원</u>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고,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첫째 <u>100만원</u>, 둘째 <u>150만원</u>, 셋째 이상 <u>200만원</u>을 공제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9조의2제1항, 3항 (자녀세액공제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시행하며, 법 시행 이후 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
 -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
 -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,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(징수 기준)
- 2024년부터 “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손자녀”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, 소득세 신고자의 손자녀 수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손자녀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불가
 -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손자녀가 있는 자의 수, 그들의 손자녀 수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세수효과 추정 곤란
 - 2023년 말 세법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“8세 이상의 자녀”에서 “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”로 확대되었으며,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씩 적용하던 세액공제금액이 둘째 자녀에 대해서만 20만원으로 인상됨
- 자녀세액공제 제도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감면 실적

□ 2022년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각각 6,394억원, 3,118억원임

- 근로소득자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2019년 제도변화(대상자 축소) 이후 3년간 (2019~2022년) 연평균 1.1% 감소
-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2019년 제도변화(대상자 축소) 이후 3년간 (2019~2022년) 연평균 2.1% 증가
- 자녀세액공제는 2017년까지 기본공제, 6세 이하 추가공제, 출산·입양공제가 적용되었으나, 2018년 6세 이하 추가공제가 폐지되어 2019년부터는 기본공제와 출산·입양공제만 적용
 - 2019년부터 7세 미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가 폐지되고, 2023년부터는 8세 미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가 폐지

[표 2] 자녀세액공제 규모 추이: 근로소득세, 귀속연도 기준

(단위: 천명,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0~2022 연평균
적용인원	3,705	2,848	2,787	2,741	2,732	2,753
(증가율)	(-0.8%)	(-23.1%)	(-2.1%)	(-1.7%)	(-0.3%)	(-1.4%)
세액공제금액	9,252	6,620	6,426	6,377	6,394	6,399
(증가율)	(-6.7%)	(-28.5%)	(-2.9%)	(-0.8%)	(0.3%)	(-1.1%)

주: 결정세액이 없는 자를 포함한 기준

자료: 국세청 「국세통계연보」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3] 자녀세액공제 규모 추이: 종합소득세, 귀속연도 기준

(단위: 천명,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0~2022 연평균
적용인원	1,381	1,168	1,117	1,213	12,40	1,190
(증가율)	(2.3%)	(-15.5%)	(-4.4%)	(8.7%)	(2.2%)	(2.0%)
세액공제금액	3,747	2,932	2,802	3,034	3,118	2,985
(증가율)	(2.1%)	(-21.7%)	(-4.5%)	(8.3%)	(2.8%)	(2.1%)

자료: 국세청 「국세통계연보」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 방법

- 2022년 귀속기준 소득규모별·자녀수별(1명, 2명, 3명 이상) 자녀세액공제 적용 인원 및 공제금액 자료(국세청 제출자료)를 바탕으로 공제금액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 - 2022년 귀속기준 자녀수별 세액공제금액을 현행(2024년) 기준으로 조정한 후, 이를 바탕으로 현행 대비 세수효과 추계
 - － 2022년 귀속 국세통계연보의 기본 자녀세액공제금액은 자녀 1명당 15만원(셋째부터 30만원)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이므로, 2024년부터 적용되는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분(15만원→20만원)을 반영하여 2022년 기준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재추정
 - 개정안 적용 시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, 자녀세액공제 적용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세수효과 추계
 - 자녀세액공제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총급여액(종합소득금액) 규모별 소득세 신고자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 추계 후 적용 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전체 세수효과 추계
 - － 국세청의 소득규모별·자녀수별 자녀 기본공제 및 출산입양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및 개정안 기준의 세액공제금액을 추계하여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 도출 후,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에 적용 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전체 세수효과 추계
 - －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현행 총급여액(종합소득금액) 규모별 1인당 세액공제금액이 첫째(30만원)와 둘째(50만원)에 대한 평균금액인 40만원 내외에서 분포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공제금액 상향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규모별로 추가 공제세액을 산출
 - － 근로소득세 세수효과 추계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(중복자) 제외
 - － 총급여액(종합소득금액) 규모별 1인당 세수효과 규모가 현행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,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
- 2022년 기준 세수효과 추계 후,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세액공제금액 증가율을 따를 것으로 가정

- 2022년 이후 세수효과는 제도변화가 없었던 2020~2022년 연평균 증가율 (근로소득세 1.2%, 종합소득세 2.1%)을 따를 것으로 가정
 - 근로소득세는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자녀세액공제액 증가율 사용
- 다만, 2023년부터 8세 이상으로 공제대상이 축소됨에 따라, 2023년은 7~20세 이상 인구에서 7세가 차지하는 비율(2023년 6.7%)만큼 공제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가정

(3) 추계 결과

- 자녀세액공제의 자녀수별 공제금액을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2년 귀속 기준 1조 4,81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근로소득세는 9,747억원, 종합소득세는 5,063억원 감소 예상
 - 가장 최신 자료인 2022년 귀속 기준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추계함에 따라 2022년 기준 세수효과 제시

[표 4]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(근로소득세, 2022년 기준)

(단위: 명, 백만원)

총급여액 규모	현행				개정안			1인당 추가 세액공제액	세수효과 ⁴⁾ (억원)
	자녀세액공제 적용 인원 ¹⁾	1인당 자녀세액공제금액 ²⁾			1인당 자녀세액공제금액 ²⁾				
		기본공제 ³⁾	출산입양공제	합계 ³⁾	기본공제	출산입양공제	합계		
A	B ₁	B ₂	B	C ₁	C ₂	C	D=C-B	E=-D×A	
합계	1,815,225	0.26	0.39	0.27	0.79	1.22	0.81	0.54	-9,747
1천만 이하	-	-	-	-	-	-	-	-	-
1.5천만 이하	-	-	-	-	-	-	-	-	-
2천만 이하	163	0.03	-	0.02	0.08	-	0.08	0.06	0
3천만 이하	15,649	0.14	0.13	0.14	0.45	0.39	0.45	0.31	-12
4천만 이하	75,455	0.19	0.30	0.19	0.60	0.93	0.61	0.42	-217
4.5천만 이하	76,822	0.23	0.33	0.23	0.69	1.04	0.72	0.48	-372
5천만 이하	101,871	0.24	0.36	0.25	0.74	1.12	0.77	0.52	-528
6천만 이하	249,141	0.26	0.39	0.27	0.78	1.21	0.81	0.55	-1,359
8천만 이하	510,510	0.27	0.41	0.28	0.82	1.28	0.84	0.56	-2,883
1억 이하	345,131	0.27	0.41	0.28	0.82	1.29	0.84	0.56	-1,943
2억 이하	397,350	0.27	0.42	0.27	0.81	1.30	0.83	0.55	-2,195
3억 이하	31,160	0.27	0.42	0.27	0.81	1.32	0.82	0.55	-172
5억 이하	8,936	0.27	0.43	0.27	0.81	1.34	0.82	0.55	-49
10억 이하	2,554	0.27	0.47	0.27	0.81	1.46	0.83	0.56	-14
10억 초과	485	0.28	0.45	0.28	0.85	1.39	0.86	0.58	-3

주: 1) 결정세액이 있는 자녀세액공제 신청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제외한 인원 추정치로, 총급여규모별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(국세청 제출)을 반영하여 추정함

2) 총급여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 및 1인당 출산입양공제금액은 각각 해당 공제를 적용받은 인원 1인당 평균 세액공제금액을 나타내며, 1인당 세액공제금액의 합계는 기본공제 또는 출산입양공제를 받은 인원 1인당 평균 세액공제금액(기본공제 및 출산·입양 공제 합계)을 나타냄

3) 2022년 귀속 세액공제금액 실적치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적용되는 자녀수별 기본공제금액(자녀 1명 15만원, 2명 35만원, 3명 65만원)을 반영하여 추정한 세액공제금액 추정치

4) 현행 소득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,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5]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(종합소득세, 2022년 기준)

(단위: 명, 백만원)

종합소득금액 규모	현행				개정안			1인당 추가 세액공제액	세수효과 ³⁾ (억원)
	자녀세액공제 적용 인원 ¹⁾	1인당 자녀세액공제금액 ¹⁾			1인당 자녀세액공제금액 ¹⁾				
		기본공제 ²⁾	출산입양공제	합계 ²⁾	기본공제	출산입양공제	합계		
A	B ₁	B ₂	B	C ₁	C ₂	C	D=C-B	E=-D×A	
합계	1,216,956	0.26	0.45	0.27	0.80	1.38	0.83	0.56	-5,063
1천만 이하	136,936	0.23	0.43	0.24	0.71	1.33	0.75	0.51	-7
2천만 이하	247,868	0.25	0.46	0.27	0.77	1.42	0.82	0.55	-301
3.5천만 이하	269,366	0.27	0.46	0.28	0.81	1.43	0.85	0.57	-1,541
4천만 이하	60,762	0.27	0.45	0.28	0.81	1.41	0.85	0.57	-348
5천만 이하	93,818	0.27	0.45	0.28	0.82	1.41	0.85	0.57	-537
6천만 이하	72,844	0.27	0.45	0.28	0.82	1.40	0.85	0.57	-416
8천만 이하	104,813	0.28	0.45	0.28	0.83	1.39	0.86	0.58	-604
1억 이하	62,986	0.27	0.43	0.28	0.83	1.35	0.85	0.57	-359
2억 이하	109,348	0.27	0.43	0.28	0.82	1.36	0.84	0.56	-616
3억 이하	26,816	0.27	0.42	0.28	0.83	1.32	0.85	0.57	-152
5억 이하	17,659	0.28	0.44	0.28	0.84	1.37	0.85	0.57	-101
7억 이하	6,109	0.28	0.44	0.29	0.85	1.36	0.86	0.58	-35
10억 이하	3,731	0.28	0.41	0.29	0.86	1.28	0.87	0.58	-22
10억 초과	3,900	0.29	0.43	0.30	0.87	1.36	0.89	0.60	-23

주: 1) 종합소득금액규모별 1인당 기본공제금액 및 1인당 출산·입양공제금액은 각각 해당 공제를 적용받은 인원 1인당 평균 세액공제금액을 나타내며, 1인당 세액공제금액의 합계는 기본공제 또는 출산·입양공제를 받은 인원 1인당 평균 세액공제금액(기본공제 및 출산·입양 공제 합계)을 나타냄

2) 2022년 귀속 세액공제금액 실적치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적용되는 자녀수별 기본공제금액(자녀 1명 15만원, 2명 35만원, 3명 65만원)을 반영하여 추정한 세액공제금액 추정치

3) 현행 소득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,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세수효과는 2022년 귀속 기준 세수변화분에 최근 공제금액 증가율과 징수시기 등을 반영하여 추계

[표 6] 자녀세액공제 확대 시 세수효과: 2024~2029년 (소득 발생연도 기준)

(단위: 억원)

세목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근로소득세	-9,308	-9,418	-9,529	-9,641	-9,755	-9,870	-57,521	-9,587
종합소득세	-4,920	-5,021	-5,125	-5,231	-5,339	-5,450	-31,086	-5,181
합계	-14,228	-14,439	-14,654	-14,872	-15,094	-15,320	-88,607	-14,768

- 소득세의 징수시점을 반영¹⁾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2025년 2조 3,751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8조 5,827억원(연평균 1조 7,16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2025년은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('25년 2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, '2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)와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가 동시 발생

[표 7] 자녀세액공제 확대 시 세수효과: 2025~2029년 (징수 기준)

(단위: 억원)

세목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근로소득세	-16,371	-11,883	-9,641	-9,755	-9,870	-57,521	-11,504
종합소득세	-7,380	-5,072	-5,177	-5,284	-5,393	-28,306	-5,661
합계	-23,751	-16,956	-14,818	-15,039	-15,263	-85,827	-17,165

1)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신고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함에 따라, 근로소득세의 경우 법 시행 첫 해인 2025년은 전년도 귀속소득분에 대한 세수효과와 당해연도 세수효과가 동시에 발생함. 다만, 2025년 2월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어 3월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4월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, 2025년에는 당해연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와 9/12(9개월분)가 반영되고, 나머지 3/12(3개월분)은 2026년(연말정산 시)에 반영되며, 2026년부터는 당해 귀속연도 세수효과가 전부 당해연도에 발생함. 종합소득세의 경우 당해연도에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분 및 당해연도 중간예납분에 대한 세수효과를 반영함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